



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업주 지원신청 방법 및 선정절차

사업총괄실 허승민 과장



1. 신청자격

0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02 해외건설업 신고

▶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아래 1~13번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10.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자
13.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1. 신청자격

02 해외건설업 신고(계속)

- ▶ 해외건설업 신고서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 관할처리기관인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에서 접수 및 처리

■ 제출서류

- 1) 해외건설업 신고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면허증 사본 등)
- 4)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1부

- ▶ 처리기한 :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1. 신청자격

03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상기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한전KDN, 코레일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
-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단, 2019.1.1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매 3년 업데이트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2019.4.3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2. 대상사업

01 대상사업

-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인프라·도시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의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
 -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 기타 **에너지·건설 관련 플랜트 사업 등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법 2조 제1호)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 철도 및 도시철도 〉



〈 공항시설 〉



〈 전원설비 〉



〈 신·재생에너지설비 〉



〈 가스공급시설 〉



〈 공공폐수처리시설 〉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2. 대상사업

02 사회개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계속)

- ▶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의 부대사업도 단독으로 지원대상 포함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게시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사업, 건축물의 설치·운영사업

03 도시개발사업

-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04 에너지·건설 플랜트 사업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에 포함여부를 우선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건설 플랜트 사업 등은 건별검토

2. 대상사업

06 지원규모

- ▶ 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10억원 이내

07 지원실적('19년, 총 16건)

- ▶ 지원국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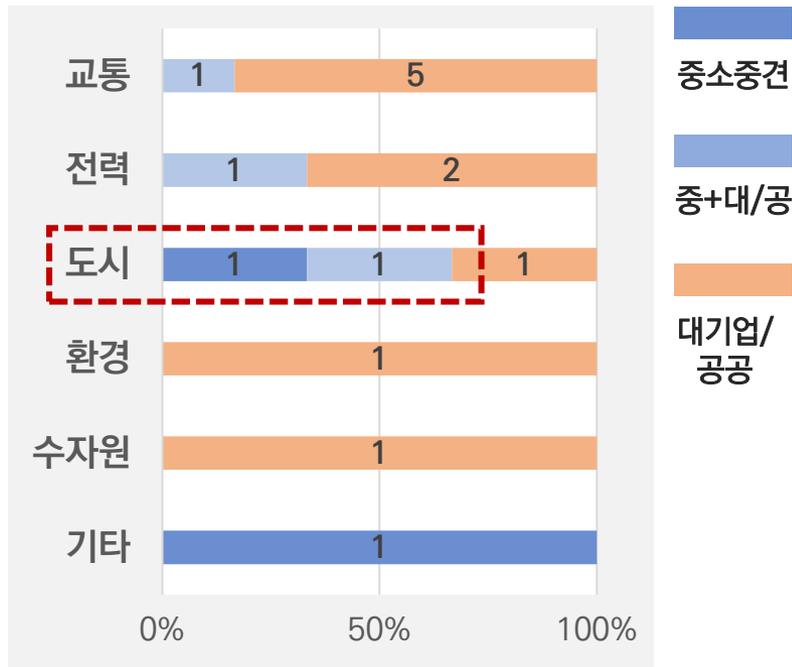
- ▶ 지원공종 분포



2. 대상사업

07 지원실적(계속)

▶ 신청기업 분포(대기업/공공 vs 중소중견)



▶ 신청기업 분포(공공기관 vs 민간기업)



▶ 지원규모 분포



3. 지원신청

01 신청절차



02 단계별 역할

단계	사업주 역할	비고
지원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서식1]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2] 사업제안서(예비타당성조사) 1부. [서식3] 사업제안서(본타당성조사) 1부. [서식4] 서약서 1부. [서식5] 타당성조사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서 1부. [서식6] 사업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중 경쟁 PT 실시 	
용역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 용역사 선정위원회 중 사업소개 PT 실시 	
F/S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용역 참여(직접/간접) - 착수보고회, 1차 현지조사, 중간보고회, 2차 현지조사, 최종보고회 참여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 경쟁입찰 참여 또는 對정부 협상 실시 	

3. 지원신청

03 신청서류

▶ [서식 1] 지원신청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구분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주소 :	(Tel) (Fax)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매출액

사업개요	사업장 (국명, 지역)	*신청인을 기준으로 내부역량 평가		
	추진방식 (BOT, BTL 등)	발주처 (EPC)	천만 불	
	사업유형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지위)	연락처

상기와 같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유의 1. 사업제안서 3부(전자파일 첨부) 2. 서약서 1부 3. 타당성조사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서 1부 4.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서식 2, 3] 사업제안서(예비/본)

1. 지원신청 요약서

가. 사업개요	
프로젝트 추진경위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춰 작성
외부환경	사업대상지역,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의 적합성 등을 기재
내부역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청기업 또는 관계회사의 사업수행 경험, 기술력 등을 기재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구조, 수입안정성, 자금조달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등을 기재
공익성	사업추진시 국내산업과 연계, 타산업과 동반진출, 상대국가의 필요성 등
제출 증빙서류 목록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MOU, 발주처 서신 등 첨부된 증빙서류의 목록 및 해당 페이지 명기)

3. 지원신청

03 신청서류(계속)

▶ [서식 2, 3] 사업제안서(예비/본)

바. 사업의 비용 및 수입 요소의 변동성 여부

- 사업특성을 고려한 수입의 안정성.비용의 추정 등이 사업계획과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입요소와 비용요소의 민감도 설명

6. 공익성 관련 사항

가. 수출과급효과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계획 또는 국내 타 산업기업과 동반 진출 가능성 및 영향도

나. 주제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 현지국의 경제부흥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 정도

7. 관련 증빙자료

- 프로젝트 실제 및 수주활동 사실(계획)을 입증하는 서류 등
 1. 관련 공시자료, 공식적인 증명원 등
 2. 수주계약서, MOU, LOI, Letter
 3. 사업비 내역서(종합, 인건비/경비/외주용역비 세부내역 - EXCEL 자료) (필수사항)
 4. 회사소개서(신청업체, 발주처), 프로젝트 수행 실적, 인력보유 현황 등
 5.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 기타 가점 관련서류도 제출필요**

▶ [서식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청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용역기관에 제공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지원받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투자가 결정된 경우, 동 펀드의 지분 및 대출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지원받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투자의를 밝히는 경우, 타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는 동 공사의 참여에 우선권을 허용하겠습니다.
4. 본인은 지원받은 타당성조사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사업추진 상황을 통보하겠습니다.

*** 해외건설특화펀드 대출참여 및 KIND 지분참여 허용조건**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4. 사업선정

01 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

▶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 위원장 : KIND 사업개발본부장

- 위 원 : 내부위원+외부위원*(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Pool을 활용하여 무작위 선출하여 **공정성 확보**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PT 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후 평가기준에 따른 위원 평가

▶ 평가기준 : 예비타당성조사·본타당성조사

▶ 종합평점(총점 200점) : 계량평가(40점) + 정성평가(160점) + 가점(20점)

▶ 선정방법 : 최소점수(150점) 이상을 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사업선정

02 평가항목(예비타당성조사)

▶ 본타당성조사 대비 **내부환경**에 높은 배점.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경험 및 대상지역 사업경험이 있을 경우 유리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200점)
1. 외부환경 (15점)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5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환경	5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5
2. 내부환경 (75점)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수행 경험	20
	대상지역 사업경험	25
	기업신용등급	15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15
3. 사업계획 적정성 (95점)	사업추진단계	30
	수입 안정성	40
	사업추진구조(출자자 구성)	25
4. 공익성 (15점)	수출파급효과(국내 기자재/인력 활용여부,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	10
	주재국 정책 및 사업적합성	5
5. 기타가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7점) 중소·중견기업 진출사업 (8점) 정부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수주 경험가점 (5점)	

4. 사업선정

02 평가항목(본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업계획 적정성 높은 배점. 사업성에 대한 기본자료 필요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200점)
1. 외부환경 (15점)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5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환경	5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5
2. 내부환경 (35점)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수행 경험	15
	기업신용등급	10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10
3. 사업계획 적정성 (135점)	사업추진단계	45
	비용의 적정성	20
	사업추진구조(출자자 구성)	10
	수입 안정성	45
	투자회수 방법 및 기간	10
수입과 비용의 민감도 검토	5	
4. 공익성 (15점)	수출파급효과(국내 기자재/인력 활용여부,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	10
	주재국 정책 및 사업적합성	5
5. 기타가점	은행의 대출의향서(LOI) 또는 추천서 제출시 가점 (5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5점) 중소·중견기업 진출사업 (5점) 정부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수주 경험가점 (5점)	